

●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38호

식품제조·가공업(주류) 영업등록 직권말소 통지

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식품제조·가공업(주류)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5월 11일
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대상 업소

업종 (인허가번호)	업소명	대표자	소재지
식품제조·가공업(주류) (제20100015059호)	저멘하스	정*석	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00-2(신흥로 224)

2.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

- 영업등록 직권말소(2022. 5. 31일자)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
-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

4. 근거법령

-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
5. 고지내용

-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- 문의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노승현 주무관, Tel: 02-2640-1316, Fax: 02-2640-1360